옥천군 공고 제2023-370호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3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행대상 마을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운행대상마을 2개소 추가

- 안남면 종미리(미산), 지수1리(모산)

4. 의견제출

○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39, FAX : (043)731-324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다람쥐택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규칙 제 호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다람쥐택시 운행대상마을(제3조 관련)

읍 면	행정리	마을명	비 고
계	22개리	27개마을	
옥천읍 (3개리 3개마을)	마항리	위망기미	
	양수1리	윗수정	
	오대리	오대리	
동이면 (2개리 2개마을)	우산2리	지매	
	금암리	황세골	
안남면 (2개리 2개마을)	종미리	미산	
	지수1리	모산	
안내면 (2개리 2개마을)	동대리	쓰리	
	장계리	가경주	
청성면 (6개리 7개마을)	산계3리	계하	
	묘금리	쇠점골(금점)	
		괴골	
	삼남리	삼거리	
	거포리	거흠	
	고당리	높은벼루	
	조천리	도내	
이원면 (4개리 4개마을)	장찬리	장찬리	
	강청1리	강청1리	
	윤정리	부르니마을	
	대동리	대동리	
군북면 (3개리 7개마을)	석호리	석결	
		진걸	
		용호리	
	이평리	추실	
		공곡재	
	막지리	맥기	
		장고개	

관련법령 발췌

□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다람쥐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② “다람쥐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마을 중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제4조(비용의 신청)

① 다람쥐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5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다람쥐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신청비용의 적정성

②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 칙 안	의 견